

[별표 6] <개정 2016. 8. 29.>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같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	1일 과징금(단위: 원)
1	4천만원 이하	9,300
2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5,600
3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9,500
4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50,000
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55,000
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0,000
7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65,000
8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4,000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0,000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07,000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123,000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40,000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6,000
14	10억원 초과	164,000

※ 비고: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의 과징금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